

11-16 (통권 제 486호)

2011. 5. 3.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 비교 및 시사점 ①

- 산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안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임상수, 장후석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4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 비교 및 시사점 ①

- 산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안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비교	4
3.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2
【별첨】	15
■ HRI 경제 지표	17

1. 개요

세계화, 소득수준의 증가, 변화하는 인구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 부문의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에 폐쇄적인 태도를 지닌 한국에서는 지난 경제위기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실직 등이 이슈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의 논의가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의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비교

(제도과 기본원칙) 외국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국인연수생제도만을 운영하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기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는 도입규모 최소화 원칙, 동일업무 동일대우의 원칙, 단기 순환 교체의 원칙, 불법체류자 최소화의 원칙 등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결정된다.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관리) 독일과 한국, 일본은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 (또는 연수생)을 도입하고 있다. 각국은 일부 제조업, 농수축산업, 서비스업에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 이동이나 업종 변경은 제한된다. 또한 단순노동 인력의 장기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가족결합을 불허하고 있다.

(내국인노동시장 위축 방지 노력) 각국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시장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내외국인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고용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특정조건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2010년 말 현재 미국인 노동자 훈련비와 국경경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달러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조치) 불법체류자의 조치는 주로 단속 및 처벌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4개국 모두에서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점은 동일한데 독일에서는 규제의 주요 대상이 고용주라는 점이 특징이다. 불법외국인 고용주는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 뿐만 아니라 공공계약 수주 자격 박탈,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 납

부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불법체류자의 근절 조치는 단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각국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합법화를 시행하거나,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존중한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종종 대규모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 사례가 있으며 독일에서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여행비 지원,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훈련과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 자진귀국 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근래 들어 불법체류자의 예방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고용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연수생 선발에 있어 연수 종료 후 귀국하여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위주로 선발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각국은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필요성이나 도입 이유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력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는 달리 적법한 노동 활동 보장, 인권 보호, 내외국인 노동시장 병행 운영 등을 위한 통합정책이 병행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도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 외국인 산업인력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고용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그간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던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징수된 고용부담금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장 관리·감독 등에 활용하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불법체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및 수요 억제 조치가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단계부터 자영업 의사 등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법체류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라도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대신하여 중재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에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귀환 조치에 있어 본인의 의지를 존중한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단순노동 외국인력 현황과 연구의 필요성	
외국인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고소득화로 산업 부문의 단순노동 외국인력 수요 증가 - 이에 따라 외국인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산업인력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4개 국가에 대해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제시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비교	
제도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기 단순근로자를 도입하고 고용부담금제를 실시 - (독일, 한국) 조건을 충족하는 단순근로자에 한해 일부업종에서 고용허가제 실시 - (일본) 외국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외국인연수생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회적·계절적으로 단기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혹 사를 제외한 모든 단기근로자는 최대 1년간만 근로할 수 있음 - (독일) 13개 동유럽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맺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3년까지 고용계약이 인정됨 - (한국) 쌍무협정을 통해 아시아 15개국으로부터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최장 3년까지 취업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쿼터제, 노동시장테스트,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 및 고용부담금제를 적용함 - (독일, 한국)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하고 노동시장테스트 및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 적용함 - (일본) 해외 일본인 동포인 니케진에게만 취업의 자유를 허용하여 내국인 노동시장을 극단적으로 보호함
불법체류자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불법체류자와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귀국프로그램, 합법화 등을 병행하고 있음 - (독일) 불법체류자의 고용주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 - (한국) 불법체류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일본)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연수생을 선별 도입하여 불법체류를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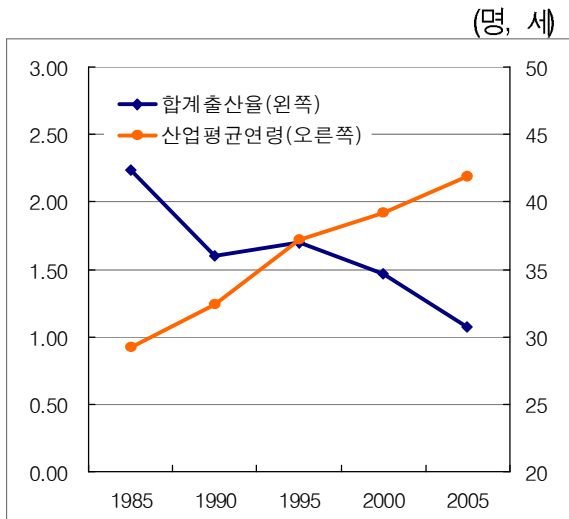
시사점	
외국인 산업인력 제도 정착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하한선 설정을 통해 합당한 보수지급 제도화 -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내 고용시장 위축 방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고용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 - 징수된 고용부담금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장 관리·감독 등에 활용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선발시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제도 마련 -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은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부여 - 불법체류자의 단속·귀환조치에 있어 본인의 의지를 존중한 선택권 제시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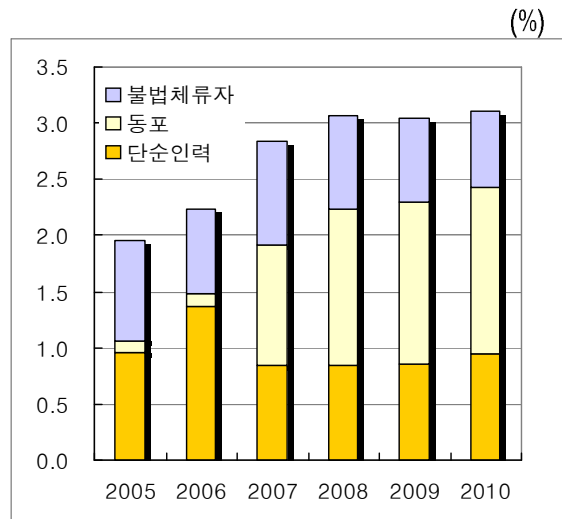
○ 연구의 필요성

- 세계화,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국내 산업의 단순노동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1980년대 말부터 국내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의 이른바 3D업종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한국은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력을 도입, 산업인력으로 활용해 왔음¹⁾
 - 한편 아직 국내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²⁾,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는 3D업종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외국인력 활용은 증가할 전망

< 국내 출산율과 산업별 평균연령 >



< 국내 외국인력 규모와 비중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년호, 통계청.

주: 1) 외국인력 비중: 부문별 외국인력/국내경제활동인구.

2) 주로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 동포는 단순인력으로 볼 수 있음.

1)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2000년 28만명에서 2010년 7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2)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나 2006년 현재 총고용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룩셈부르크 43.8%, 스위스 24.4%, 호주 25.6%, 미국 15.8% 등 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으로 낮은 편.

- 한편 외국인력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하지만 외국인력의 증가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외국인 범죄 및 재정비용 증가 우려 등 부정적 측면도 증가함
 - 추가적으로 산업 및 사업장 차원에서 필수적 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 내국인 근로조건의 악화, 미숙련 외국인력의 산업현장 투입,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 하락 등의 문제도 제기됨³⁾

- 한국은 외국인력에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외국인력의 부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은 외국인 유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외국인 포용에 소극적이고 그나마 외국인 유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도입도 늦었음⁴⁾
 - 뿐만 아니라 지난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등이 이슈화되면서 체류외국인 증가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오히려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효과적인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경제여건상 국내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하면 외국인력 유입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체계화가 현실적인 대안임
 - 이미 오랜 기간 외국인의 유출입을 경험한 미국 및 독일과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제시

○ 연구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4개 국가에 대해 산업노동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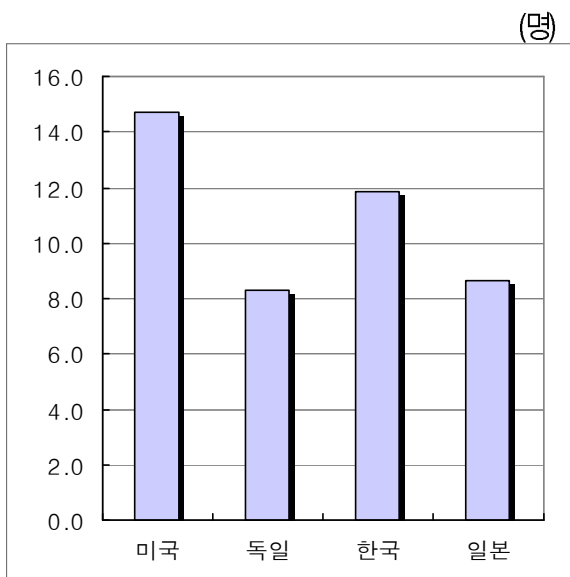
3) 외국인력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외국인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2011.2.22) 참조.

4)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과제로 지적되었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2010년 4월에서야 신설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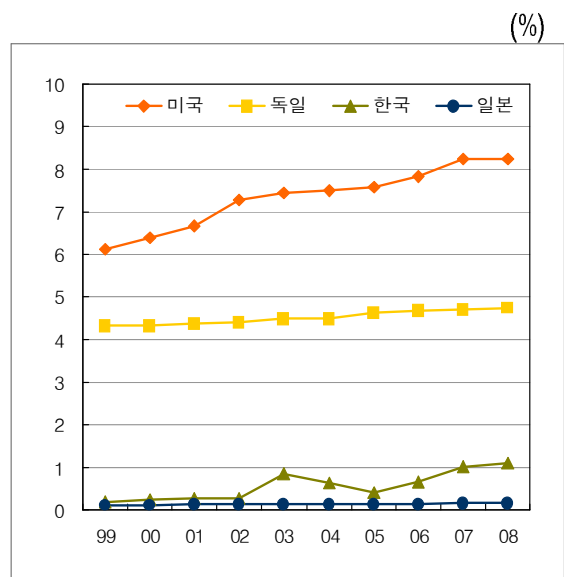
- (비교대상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4개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

- 미국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의 역사가 길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를 갖추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로 산업인력 수요가 높지만 고령화·고소득화로 내국인만으로 산업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는 점이 한국과 비슷하여 검토

< 국가별 조출생률 >



< 국가별 외국인력 비중 >



자료: IMF, OECD, UN.

- 주: 1)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당해년도의 연앙인구)) * 1,000.
 3) 미국의 조출생률은 2007년 기준. 나머지는 2008년 기준.
 2) 외국인력 비중은 전체 외국인력(전문가 포함)을 토대로 산정된 수치.

- (연구대상 외국인력) 단기 산업인력을 구성하는 단순노동 외국인력과 불법체류자에 대해 연구

- 외국인 단순노동인력은 각국 산업에 유동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며 상당수의 해외 동포⁵⁾들이 포함되어 있음
- 불법체류자는 사실상 노동 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⁶⁾ 외국인력의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독일의 경우 과거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주하였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독일로 돌아온 '독일인 재거주자 (Aussiedler)'가 있고 일본에는 해외 동포 2,3세인 니케진이 있음.
 6) 국내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15% 안팎이며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의 한 부류로 간주할 수 있음.

2.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비교

- 단순노동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
 - 많은 선진국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함
 - 하지만 단순노동 외국인력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이들을 영구히 받아들이는 것은 꺼리고 있음
 - 따라서 내국인과 자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각국은 단순노동 외국인력은 한시적으로 투명하게 활용하며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되,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정주는 금지되어 있음
 - 한편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⁷⁾를 야기할 수 있어 각국은 불법체류자의 근절 및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

○ 단순노동 외국인력 제도와 기본 원칙

- (제도) 미국, 독일, 한국에서는 외국인 단순노동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연수생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 단순노동근로자를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음
 - 미국⁸⁾과 독일, 한국은 모두 사용자가 단순노동 외국인력 사용신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활용하는 쿼터제 기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원칙적으로 단순노동 외국인력 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 차원에서 외국인연수생제도⁹⁾를 운영하고 연수생의 근로를 제한적으

7) 불법체류자는 수입국의 제도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인권침해·외국인범죄자 증가 등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정치적 압력 증대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함.

8) 미국은 H-1C(간호인력부족지역 간호사 비자), H-2A(농업체 단기 또는 계절근로자 비자), H-2B(비농업체 단기 근로자 비자), L-1(기업내 전근자) 등의 비자를 통해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음.

9) JAVADA(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의 외국인기초기능연수생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청년층에 대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하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제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로 허용함

-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단순노동 외국인력 도입의 목적과 배경이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특징

-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는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규모로 한시적으로 허용

- 도입규모 최소화 원칙: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각국은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동일업무 동일대우의 원칙: 동일 업종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 단기 순환 교체의 원칙: 외국인력은 산업부흥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외국인력의 사용기간은 단기로 제한하며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인력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
- 불법체류자 최소화 원칙: 불법체류자는 인권 사각지대를 확장하고 내국인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가별 단순노동근로자 정책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제도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기본 원칙	최소규모 도입 내외국인 차별금지 단기 순환 교체	최소규모 도입 내외국인 차별금지 단기 순환 교체	X	최소규모 도입 내외국인 차별금지 단기 순환 교체

주: 1) O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함.
 2)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서만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노동인력 도입과 관련한 원칙이 없음.

○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관리

- (근로자 자격) 대부분 쌍무협정을 통해 선호¹⁰⁾하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10) 대개 업종별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율 및 수입국 국민과의 인정적 문화적 유사성,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5~13개 국가에 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쿼터를 설정하여 외국인

도입·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또는 연수생)는 일정수준의 언어능력 및 신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으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독일의 경우 1989년 말부터 13개 동유럽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맺어 국가별로 쿼터를 설정,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은 연령제한¹¹⁾을 충족하고, 일정수준의 독일어 능력, 유사직무수행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은 2011년 현재 총 15개국¹²⁾으로부터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연령제한을 충족하고 한국어 시험과 신체 검사 등을 통과해야함
- 일본은 연수생 선발 시 개발도상국¹³⁾ 출신의 25세 미만 청년이며,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 및 관련 직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어 능력과 심신이 건강한 자 등의 조건을 요구함

- (취업업종) 국가별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회적·계절적·성수기에 단기 또는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음
- 독일이 국가간 합의나 노동시장 상황을 근거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용역근로자, 간호사, 단기취업근로자(계절근로자, 전시장설치보조근로자), 국경왕래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의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음

- (고용기간 종료 후 귀국 조치) 각국은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영구이주, 또는 장기체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근로기간을 대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가족결합은 불허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외국인 간호사에 한해 최대 3년간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를 도입함.

11) 출신국별로 다르지만 최소 18세 이상, 최대 40세 이하.

12)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중국, 동티모르.

13)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최대 1년 동안만 취업을 허용함
- 독일에서 취업하려는 단순노동 외국인력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시설치자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이보다 짧은 9개월만 허용됨
 - 한국에서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1회 입국시 최대 3년까지 고용계약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간 허가를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 또는 신탁(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¹⁴⁾
 - 3개국에서 모두 단순노동 외국인력은 가족 결합이 금지되어 있음¹⁵⁾

< 국가별 단순노동근로자 관리 정책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쌍무협정	X	O	X	O
근로자 자격	특정조건 없음	독일어 및 통과 신체검사	X	한국어 및 통과 신체 검사
취업업종	농업, 일부 서비스업	용역근로자, 간호사, 단기취업근로자 국경왕래근로자	제조업	농수산업,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업종 변경 불가	O	O	X	O
출국 보장 (보험 등 가입)	X	X	X	O
체류 및 가족결합 금지	O	O	X	O

주: 1) O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함.
 2)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서만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운영하며 단순노동외국인력의 합법적인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 단순노동인력 정책이나 제도가 없음.

○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 방지

- (도입제한조건 적용) 각국은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의 쿼터를 설정하고 있으며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테스트를 실시함
- 미국, 독일, 한국은 모두 적정수준의 외국인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력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15) 비교대상국은 아니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싱가포르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할 경우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근로자의 가족결합을 억제하고 있음.

- 의 총도입 규모 또는 업종별 도입규모를 설정하여 운용함¹⁶⁾
- 또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¹⁷⁾와 내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차별금지¹⁸⁾의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최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14일로 연장¹⁹⁾하여 노동시장테스트를 강화하였음

- (고용부담금제) 일부국가에서는 외국인고용사업주로부터 내외국인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 내외국인 간의 임금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²⁰⁾에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부담금²¹⁾ 등의 명목으로 내외국인간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징수하여 내국인 노동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 미국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내국인근로자 교육, 국경경비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고용주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²²⁾
- 독일은 용역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수수료 명목으로 용역근로자 1인당 매월 75유로를 징수함
- 아직까지 한국은 경영계의 반대로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16)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배정받은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임금을 보조받는 효과를 갖게 됨에 따라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연할 우려 있음.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는 최소수준에서 결정함. 미국은 H-1B비자의 도입 상한선을 연간 65,000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년 단순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함.

17) 노동시장테스트란 특정 일자리를 채용만한 내국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고용에 앞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국가별로 3일~15일 가량) 채용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일자리에 지원하는 내국인이 없을 경우 정부(주로 노동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18) 동일 조건의 근로자라면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년 4월 12일 개정).

20) 외국인근로자는 초기 적응 어려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금지의 실효성은 낮음. 한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20% 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1) 고용부담금제는 단순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대상국은 아니지만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력과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업종별, 숙련도별 차등징수방식의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함(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22) 2010년말 현재 직원 50인 이상 기업 또는 직원의 50% 이상이 H-1B(임시 전문인력 비자) 또는 L-1(주재원 비자) 신분인 기업은 H-1B 비자 신청시 신청서 접수비 320달러, 비자사기방지 비용 500달러, 미국인 노동자 훈련비 1,500달러, 국경경비 비용 2,000달러 등 총 4,320달러를 부담해야 함.

< 단순노동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가별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 방지 정책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노동시장테스트	O	O	X	O
내·외국인 차별금지	O	O	X	O
쿼터 제한	O	O	X	O
고용부담금제	O	O	X	X

주: 1) O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함.
 2) 일본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운영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없음.

○ 불법체류자의 조치

- (처벌) 대부분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관련자²³⁾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미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벌금, 추방 및 최고 10년형에 이르는 징역형 등을 내릴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도 불법고용인수와 누적횟수에 따라²⁴⁾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²⁵⁾ 필요에 따라 불법체류 가정의 여성과 자녀의 교육, 부분적 의료 복지 등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규제의 주요 대상은 고용주로, 불법외국인 고용주는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 공공계약 수주 자격 박탈, 본국송환비용 지불,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한국은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 브로커 등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²⁶⁾ 고용주에 대해 그 불법체류자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²⁷⁾
 - 일본은 불법취로조장죄(不法就勞助長罪)를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업주 및 브로커 등 관련자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²⁸⁾을 내릴 수 있음

23) 불법체류자의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불법취업을 위한 교통편 제공이나 불법체류자의 도망을 도와준 사람도 포함.

24) 불법체류자 고용의 첫 번째 위반시에는 일인당 최고 \$2,200까지, 두 번째 위반시에는 최고 \$5,500, 그 이후에는 최고 \$11,000달러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6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함.

25) 이들은 대개 숙주주의에 근거하여 미국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수는 없지만 기타 기본 교육 및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6)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27)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 다만 이 같은 불법체류자의 근절 조치는 단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²⁹⁾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자진귀국 프로그램) 미국, 독일, 한국은 비주기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 귀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 미국은 2005년부터 도망자 안전투항 프로그램³⁰⁾을 시행해 왔으며 200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미국 재입국 신청을 허용하는 자진귀국 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독일은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해 연방정부-주정부 공동,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자진귀국촉진 프로그램³¹⁾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귀국 여행비 지원이나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훈련과 실습 등으로 이루어짐
 - 한국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음
 - 다만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 **(합법화) 합법화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종종 시행되어 왔으며 한국도 2003년 한차례 시행한 바 있음**
 - 미국은 1987~88년 동안 약 260만명의 외국인들의 합법화³²⁾되었으며 2006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불법체류한 이주자들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였음
 - 독일은 1978년 외국인법 시행령에 따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해 합법화 조치³³⁾를 취한바 있으며 2006년에는 체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 난민 신청자를 합법화하였음
 - 한국도 200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20만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 사례가 있음

28)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고용허가 획득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2백만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됨.

29) 일례로 미국은 불법 이주 예방을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명의 이주희망자가 사막횡단 등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30) 불법체류 도망자들 가운데 형사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 자국 귀국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귀국 프로그램.

31) '망명신청자 재통합 및 이주 프로그램(Reintegration and Emigration Programme for Asylum-Seekers in Germany, REAG)'나 '정부보조 송환프로그램(Government Assisted Repatriation Programme, GARP)' 등.

32) 1986년 이주 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33)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무기한 노동 허가, 8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부여.

- 다만 합법화의 경우 현재 불법체류외국인의 신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임
- (예방적 조치) 근래들어 불법체류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고용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캠페인에 그치고 있음
 - 불법체류자의 발생 원인³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³⁵⁾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진귀국 계획이 있는 외국인력 선별과 저축 및 미래대비 교육 등 불법체류의 원인을 제거하여 불법체류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음³⁶⁾
 -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독일, 한국 모두 불법체류자의 예방조치로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
 - 일본의 경우 외국인 연수생 선발에 있어 연수 종료 후 곧바로 귀국하여 습득한 기능·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등에 기능근로자로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국가별 불법체류자 정책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불법체류자 사후 조치				
불법체류자 처벌	O	O	O	O
관련자 처벌	O	O	O	O
자진귀국 프로그램	O	O	X	O
합법화	O	O	X	O
불법체류자 예방 조치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O	O	O	O
저축 등 경제교육	X	X	X	X
선발시 자진귀국 가능성 고려	X	X	O	X

주: O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관련 제도나 조건이 있음을 의미함.

34) 불투명한 근로자 선발·도입과정이나 인력송출기관의 잘못된 관행, 정보 비대칭의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낭비로 인한 부(副)축적의 실패 등.
 35)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돈을 가족이 모두 탕진하거나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근로기간 중 낭비하여 막상 귀국 시점에 모아둔 돈이 없는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취업이 불투명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
 36) 연구 결과(Martin, 2004)에 따르면 귀국 후에 자기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거나 원래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들 선별하여 도입하는 것이 자진귀국을 촉진하고 불법체류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

3.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의 특징과 평가

- 각국은 제한적으로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은 외국인력의 취업조건을 까다롭지 않으나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및 적극적인 불법체류자 예방 노력이 특징임
 -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의 경우 단기 외국인력의 취업 제한 조건은 없으나,
 -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쿼터를 제한하고 다양한 명목의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있음
 - 또한 엄격한 국경경비, 합법화를 통한 불법체류자 방지 노력이나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배려한 자진귀국프로그램 및 2세의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특징
- (독일) 독일의 경우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도입은 인근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의 주 처벌 대상이 불법고용주라는 특징이 있음
 - 독일이 단순노동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목적은 자국 산업의 노동력 충원이 아닌 인근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에 있어 주 처벌대상을 불법고용주로 삼고 있는 점이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특징
- (일본) 일본은 니케진을 제외한 모든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
 -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유입창구가 없어 단순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니케진과 불법체류자로 구성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
 - 한편 연수생 선발에 있어 자진귀국의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한국)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 방지 노력이나 불법체류자 조치는 미흡한 측면

이 있음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외국인력 활용을 제도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 고용부담금제 등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장치가 미흡함
- 또한 불법체류자와 관련하여 예방 조치가 부재하고 불법체류자와 관련자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음

○ 시사점

첫째, 외국인 산업인력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제활동 보장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합당한 보수 지급을 제도화해야 함
- 또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기업별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여 필요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입 후에는 산업 현장에서 단기 외국인력의 순환교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해야함

둘째, 국내 고용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서두르고 외국인 산업 인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그간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던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을 서둘러야함
 - 과거 경영계는 비용 증가,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반대해왔음
 - 한편 고용부담금제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및 외국인력의 관리재원 마련 등에 효과적인 장치로 미국 외 상당수 국가가 운영하고 있음
- 징수된 고용부담금은 내국인 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장 관리·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셋째, 불법체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및 수요 억제 조치가 요구된다.

- 합법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단계부터 자영업 의사 등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불법체류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정기간 이상 합법 외국인력만을 고용해온 우수 고용주를 선발하여 공공사업 수주 및 기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넷째, 불법체류자의 생계 및 복지 지원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가 최소한의 생계 및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특히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일종의 민간 외교관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함
- 불법체류자라도 합법적인 임금을 수령하고, 그 자녀가 일부 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 불법체류자라도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대신하여 중재·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에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야 함
- 불법체류자의 단속, 귀환 조치에 있어 강압적인 진압·비인도적 방식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의지를 존중한 선택권을 제시해야함
 -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법체류자의 안전한 귀환을 촉진할 수 있음 **HRI**

전혜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02-2072-6241)

[별첨]

<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도입 업종·규모 및 고용부담금 >

(단위: 싱가포르달러)

	외국인 고용 상한선	근로자 구분	고용부담금	
			월	일
제조업	총종업원 수의 40% 이하	숙련	30	1
		미숙련	240	8
	총종업원 수의 40% 이상에서 50% 이상	숙련	30	1
		미숙련	310	11
건설업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 외국인근로자 4명까지	숙련	30	1
		미숙련	470	16
가공업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 외국인근로자 3명까지	숙련	30	1
		미숙련	295	10
조선업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 외국인근로자 3명까지	숙련	30	1
		미숙련	295	10
서비스업	총인력의 30%까지	숙련	30	1
		미숙련	240	8
부두하역업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 외국인근로자 3명까지	면허소지자	30	1
		MPA 항운노조원 자격 소지자 수x2 이내	240	8
가정부			345	1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E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3	0.2	8.1	7.2	4.4	4.8	6.1	4.3	
	민간소비 (%)	1.3	0.2	6.3	3.7	3.3	3.2	4.1	3.8	
	건설투자 (%)	-2.8	4.4	2.3	-2.9	-2.3	-4.7	-2.3	1.5	
	설비투자 (%)	-1.0	-9.1	29.9	30.2	24.3	16.0	24.5	8.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32	328	3	89	99	92	282	197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33	426	30	145	114	128	417	304
		수출 (억 \$)	4,220	3,635	1,011	1,203	1,171	1,289	4,674	5,168
		증감률 (%)	(13.6)	(-13.9)	(35.8)	(33.1)	(23.6)	(24.0)	(28.6)	(10.8)
		수입 (억 \$)	4,353	3,231	981	1,057	1,507	1,161	4,257	4,864
증감률 (%)	(22.0)	(-25.8)	(37.4)	(43.0)	(24.6)	(25.1)	(31.8)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7	2.6	2.9	3.6	2.9	3.0	
실업률 (%)		3.2	3.6	4.7	3.5	3.5	3.3	3.7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2	76	78	74	82	78	88.7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